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2. 12. 16 선고 2022가단62645(본소), 2022가단67091(반소) 판결
[하도급대금 청구의 소 · 구상금]

전 문

원고(반소피고)A

피고(반소원고)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강남

담당변호사 진수장

변론 종결 2022. 10. 7.

판결 선고 2022. 12. 16.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2,846,804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3. 15.부터 2022. 12. 1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 및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4/5는 피고(반소원고)가, 나머지는 원고(반소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56,237,304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24,145,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2. 1.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적 사실관계

○ 원고는 2021. 3. 2. 피고와 사이에, C 주식회사가 시공 중인 여수시 D 외 13필지 공동주택 신축공사 중 스틸커튼월 및 각종 에이엘(AL)쉬트, 철구조물을 제작·납품하기로 하는 공사 계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 기간: 2021. 3. 2.부터 2022. 1. 17.까지

- 계약금액 : 222,2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대금지급 : 기성 부분금 월 1회

○ 원고는 가스 배관 방법카바 부분을 제외하고(피고가 타 업체에 맡겼다),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스틸커튼월 및 철구조물 등의 제작·납품을 2021. 10.경까지 완료하였다.

○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금액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지급하였다.

- 2021. 7. 22.자 현금 및 2021. 7. 23.자 어음으로 합계 44,000,000원 지급

- 2021. 8. 21.자 현금 및 2021. 8. 23.자 어음으로 합계 39,600,000원 지급

- 피고가 원고를 대신하여 지급한, (1) E, F, (주)G, H에 대한 직불금 합계 12,208,196원, (2) I, J, K, L, M 외 4인, F에 대한 직불금 합계 40,645,000원, (3) N 외 3인의 노임 20,900,000원을 각 공제 내지 상계처리

- 총 합계 157,353,196원(= 44,000,000원 + 39,600,000원 + 12,208,196원 + 40,645,000원 + 20,900,000원)

[인정근거] 갑 1 내지 18호증, 을 1 내지 5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계약금액 222,200,000원에서 원고가 공제를 자인하는 가스 배관 방법카바 부분의 공사비 16,101,000원 및 앞서 본 기지급금 합계 157,353,196원을 제한 잔액 48,745,804원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잔대금 42,846,804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나. 그런데 원고가 이에 추가하여, 피고가 부담해야 할 현장관리자 배치 비용 17,308,350원 상당과 자재 물량의 증가·감소로 인하여 발생한 추가 자재비 12,183,150원 상당의 지급을 피고에게 구한다. 우선 원고가 현장관리자 배치 비용에 대해서 피고에게 지급을 구하는 부분의 청구원인을 구상금으로 선행하여 보건대,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은 비용을 지출한 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이를 피고에게 구상할 법적 근거에 관한 구체적 주장 자체가 없으므로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원고 주장의 추가 자재비 부분이 이 사건 계약에 포함된 것이 아니라 그 외에 추가로 계약이 체결되었던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도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 잔금 42,846,80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인 2022. 3. 15.부터 피고가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22. 12. 16.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2021. 8.분과 2021. 9. 1.부터 15.까지의 기성고를 초과한 3,245,000원 상당을 원고의 근로자인 M 등의 노임으로 대신 지급하였고, 또한 N 외 3인의 노임으로 20,900,000원을 대신 지급하였으므로, 위 총 24,145,500원(= 3,245,000원 + 20,900,000원)을 이 사건 반소로써 원고에게 구상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그러나 위 M 등 4인의 노임 및 N 외 3인의 노임을 피고가 원고 대신 지급한 사실 및 위 돈을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계약금액 중 일부로 이미 공제 내지 상계처리한 사정은 모두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가 위 돈을 원고에게 별도로 구상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결국 피고의 반소 청구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본소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임수희